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354호)

2025. 11.

##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 목 차

Ⅰ. 개요 ····· 1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2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및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조인철의원안, 이건태의원안, 천하람의원안, 김선교의원안, 민형배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신동욱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정성호의원안, 김승수의원안, 정연욱의원안, 임오경의원안, 박성훈의원안, 정부안, 서영교의원안, 조승래의원·김승수의원안) ····· 2

# Ⅰ. 개요

## 1.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354호)

###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오경의원 등 12인 외 1인

(2) 제 안 일 : 2025. 7. 8.

(3) 회 부 일 : 2025. 7. 9.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및 영상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영상콘텐츠는 사전제작부터 배급을 통한 수익화까지 다년의 기한이 소요되고, 영상콘텐츠를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높은 국가 전략산업인 점을 고려해봤을 때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

##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및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조인철의원안, 이건태의원안, 천하람의원안, 김선교의원안, 민형배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신동욱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정성호의원안, 김승수의원안, 정연욱의원안, 임오경의원안, 박성훈의원안, 정부안, 서영교의원안, 조승래의원·김승수의원안)

| 현 행 | 개정안 |
|---|---|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의6) | ○ 적용기한 연장 또는 폐지 |
| ○ 공제대상: 다음 어느 하나의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국내외 발생비용<br>-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br>- 영화<br>-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 ○ 공제대상: 개정안별 상이 |
| ○ 공제율: ①(기본공제)+②(추가공제)<br>- ①: 대 5%, 중견 10%, 중소 15%<br>- ②: 대·중견 10%, 중소 15%<br>*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 | ○ 공제율: 개정안별 상이 |
| ○ 공제시기: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 | ○ 공제시기: (현행과 같음) |

| 현 행 | 개정안 |
| --- | --- |
| ○ 적용기한:<br>2025. 12. 31. | ○ 적용기한:<br>2027. 12. 31. (서영교의원안)<br>2028. 12. 31. (김선교의원안, 민형배의원안, 신동욱의원안, 정성호의원안, 정연욱의원안, 박성훈의원안, 정부안, 조승래의원·김승수의원안)<br>2029. 12. 31. (윤준병의원안, 김승수의원안)<br>2030. 12. 31. (조인철의원안, 임오경의원안)<br>2035. 12. 31. (천하람의원안)<br>2040. 12. 31. (김성원의원안)<br>영구 세액공제 제도화 (이건태의원안)<br><br>○ 시행일:<br>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 김성원의원안)<br>2026. 1. 1. (조인철의원안, 천하람의원안, 김선교의원안, 신동욱의원안, 정성호의원안, 김승수의원안, 임오경의원안, 박성훈의원안, 정부안, 서영교의원안)<br>공포 후 6개월(이건태의원안, 민형배의원안, 정연욱의원안, 조승래의원·김승수의원안) |
|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제25조의7) | ○ 적용기한 연장 |
| ○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 | ○ 적용대상: (현행과 같음) |
| ○ 공제대상: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 | ○ 공제대상: 개정안별 상이 |
| ○ 공제율: 3% | ○ 공제율: (현행과 같음) |
| ○ 공제시기: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상영 또는 제공일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 공제시기: (현행과 같음) |
| ○ 적용기한:<br>2025. 12. 31. | ○ 적용기한:<br>2027. 12. 31. (서영교의원안)<br>2028. 12. 31. (김선교의원안, 정연욱의 |

| 현 행 | 개정안 |
| --- | --- |
| | 원안, 박성훈의원안, 정부안, 조승래의원·김승수의원안)<br>2029. 12. 31. (윤준병의원안)<br>2030. 12. 31. (조인철의원안)<br>2040. 12. 31. (김성원의원안)<br><br>○ 시행일:<br>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 김성원의원안)<br>2026. 1. 1. (조인철의원안, 김선교의원안, 박성훈의원안, 정부안, 서영교의원안)<br>공포 후 6개월(정연욱의원안, 조승래의원·김승수의원안) |

* 조인철의원안 2025. 1. 14. 발의(의안번호 7495), 이건태의원안 2025. 2. 11. 발의(의안번호 8072), 천하람의원안 2025. 2. 19. 발의(의안번호 8290), 김선교의원안 2025. 3. 18. 발의(의안번호 9035), 민형배의원안 2025. 3. 21. 발의(의안번호 9228), 윤준병의원안 2025. 3. 25. 발의(의안번호 9330), 신동욱의원안 2025. 3. 27. 발의(의안번호 9409), 김성원의원안 2025. 5. 9. 발의(의안번호 10436), 정성호의원안 2025. 6. 10. 발의(의안번호 10694), 김승수의원안 2025. 6. 25. 발의(의안번호 11073), 정연욱의원안 2025. 6. 26. 발의(의안번호 11105), 임오경의원안 2025. 7. 8. 발의(의안번호 11354), 박성훈의원안 2025. 8. 21. 발의(의안번호 12301),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서영교의원안 2025. 9. 16. 발의(의안번호 13025), 조승래의원·김승수의원안 2025. 10. 15. 발의(의안번호 13606)

□ 개정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와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

첫째, 영상콘텐츠산업의 특성상 콘텐츠가 기획되어 제작에 착수하고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기까지 수년의 기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일몰기한을 충분히 연장할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자 및 관련 출자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둘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본 조세특례 도입에 따른 효과 분석을 수행한 결과 기업당 연평균 8억원 이상의 제작비 투자 증가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향후 5년간 부가가치 유발액은 1,623억원, 순세수 감소액은 1,270억원으로 추정되어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음.[1)]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2개 제도는 영상콘텐츠[2)] 제작에 한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다른 업종[3)]의 특수목적회사 또는 영상콘텐츠 외 공연, 전

---

1) 한국콘텐츠진흥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효과분석', 2025. 2.

2)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제25조의6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 2.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나.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중 다큐멘터리
   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애니메이션 중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애니메이션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이하 이 조에서 "영화"라 한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3)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장르로는 방송, 영화, 에니메이션 등 영상콘텐츠 외에 공연, 전시, 음악, 게임, 융복합, 만화, VR 등 다양한 장르가 있음.

시, 음악과 같은 다른 문화산업과의 형평성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문 의 처 |
| --- |
| 02)6788-5154 |